

# 전 주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20가단 (본소) 부당이득금반환

2021가단 (반소) 기타(금전)

원고(반소피고)

전주시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301호(만성동, 에이치타워)

(송달영수인 전종필)

피고(반소원고)

안산시

송달장소

(송달영수인 )

변 론 종 결 2021. 10. .

판 결 선 고 2021. 11. .

## 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.부터 2021. 11. 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### [본소 청구취지]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6.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[반소 청구취지]

원고는 피고에게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본소 및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6. 2.경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으로부터 전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에 있는 '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'(이하 '이 사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'이라고 한다) 인수를 제안받았고, 당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은 원고에게 소개비 150,000,000원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. 이에 따라 원고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 알려주는 피고 명의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계좌로 2016. 2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00,000,000원, 2016. 2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. 50,000,000원 합계 150,000,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고, 그 무렵 피고는 위 150,000,000원 중 60,000,000원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에게 송금해 주었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을 운영하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'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과 이 사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 인수



# 전 주 지 방 법 원

## 제 2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21나 (본소) 부당이득금반환

2021나 (반소) 기타(금전)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전주시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전

종필 사무소(만성동)(송달영수인 전종필)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안산시

송달장소

(송달영수인 )

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1. 11. 선고 2020가단 판결

변 론 종 결 2022. 6.

판 결 선 고 2022. 8.

### 주 문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1.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